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40 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이병진·장종태·박상혁

안태준 · 소병훈 · 권향엽

송옥주·양부남·임미애

이상식 · 이기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 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4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본문 중 "고용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	제54조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
의 조치) ① (생 략)	의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	②
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	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	고용노동부장관
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	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	,,
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	
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	
한다.	